

의안 번호	18-124
----------	--------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제공인력 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
- 산후조리비
  - : 임산부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서비스 제공기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다.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출산가정이거나,
- 소득에 상관없이 예외지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자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희귀난치성 출산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만18세 이하의 미혼 산모)

라. 지원 기준 및 서비스 내용(안 제4조 ~ 제5조)

- 출산 후 60일 이내 5일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산모에게 40만원 범위에서 지원

마. 지원 신청(안 제6조)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

바. 이중지원 제한(안 제7조)

-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되는 경우

사. 환수조치(안 제8조)

-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아. 운영지침(안 제9조)

자. 협조요청(안 제10조)

차. 지원관리(안 제11조)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5년간 보관

카. 시행규칙(안 제12조)

타. 부칙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나.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다.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10. 11. ~ 10. 31.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권고사항 없음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임산부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출산가정
2.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7.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산모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경우 40만원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하고 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은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 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9조(운영지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관리)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산후조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대장과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접수번호 : No.

\* 서비스 모두 이용하신 다음 신청해주세요.(모자건강센터)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출산일	년	월		일	H.P)
신생아	[ ] 단태아 [ ] 쌍생아 [ ]삼태아			가구원	명
의료보장	건강보험(□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고지액	남편 산모 합산
소득유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예외지원				
예외지원 대상 (해당자만 체크)	<input type="checkbox"/>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산모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산모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input type="checkbox"/> 미혼 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이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일)				
신청금액	₩ (금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서명) 확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전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1부    2. 이용비용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매출전표 등) 3.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소득제외한 지원대상자 입증 서류 1부 5.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열람 미동의시)	
담당자	신청금액	원
확인사항	지원 결정액	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① 지원금액 : 출산가정 자녀 1인당 400,000원 이내

② 지원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자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산출근거 875명 X 400 =350,000	-출생아 예상수 : 2400명 -지원 대상자 비율 : 36.5% -예상 대상자 수 : 875명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구분 세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인건비	30,268	30,268	30,268	30,268	30,268	151,340
총 비용		380,268	380,268	380,268	380,268	380,268	1,901,34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구분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등	380,268	380,268	380,268	380,268	380,268	1,901,340
	합계	380,268	380,268	380,268	380,268	380,268	1,901,34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재원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보건과 신현정
연락처	02-3153-9073